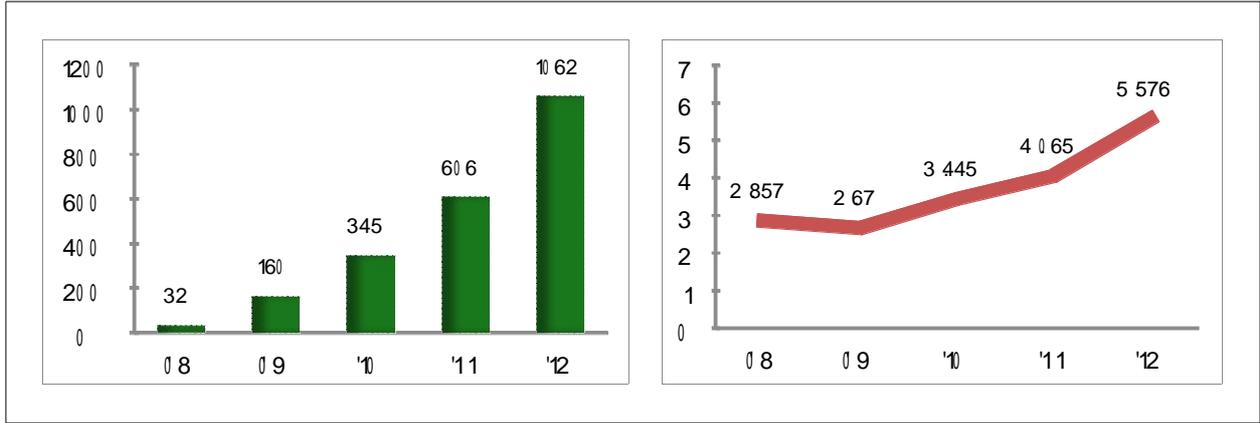


<모바일 쿠폰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동향>



가
가 가 .
가
가

※ (피해사례) 이용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환불을 받으려 하였으나 방법을 알 수 없어 포기하게 된 사례가 발생함.

가 .

2

<요 약>

- ◆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 추가
- ◆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 구체화
- ◆ 기타 상품에 대한 규정내용 수정 · 보완

가.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

- 가 , 가 , 가 .

○ , 가 .

<업체별 모바일 쿠폰의 환불 기준 및 정보제공 현황>

사업자	환불 요청 주체		약관상 환불기준	상품정보 현황 예시
	구매자	수신자		
A사	수신자 동의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내 :100% • 유효기간 경과후 :5년 내 90% 	
B사	○	X		
C사	○	○		

‘ . ’

○ , 가 .

○ (), , , ()

※ (피해사례1) 영화 티켓을 구매하였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하지 못함.

※ (피해사례2)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으나, 자신이 관람 가능한 날짜의 주연배우가 자신이 생각했던 배우와 달라 곤란을 겪음.

‘ , ’
 ○ , 가
 가 , 가 가 .
 - 가
 ‘ , ’ , *가 .

* 모델명, 제조국·원산지, 제조자 · 수입자 등

※ (피해사례) 소셜커머스를 통해 마사지 서비스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하였으나, 자격증을 받은 마사지사인지 의심스러운 저질의 서비스를 받음.

○ , , . 가, , .
 .

○ 가 .

* 통신 판매업자들은 품질 보증기준을 청약철회기간으로 오해하여 ‘구입 후 7일 이내 반품 · 교환 가능’ 등으로만 표시하는 경우가 빈번함.

○ , , .
 - , .
 - , A/S가 * .

* 노트북, 카메라, MP3, 전자사전,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 가 KC * KC 가 .

*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을 통해 인증번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

○ KC , KC 가 .

○ , .

○ , .

- , .
* (사용연령) 비비탄총, 키편 등, (체중범위) 카시트, 구명복 등.

가

○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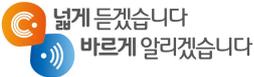
○ , .

3

가

4 1 , 3 '14

30 가 . . . 가 .

	www.fcgo.kr		
---	--	--	---

<붙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I. 목적 (생략)</p> <p>II. 일반원칙 1. (생략)</p> <p>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4)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5) 기타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3. ~ 4. (생략)</p>	<p>I. 목적 (현행과 같음)</p> <p>II.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p> <p>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7)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8) 기타 <u>재화</u>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3. ~ 4. (현행과 같음)</p>

<신 설>

5.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6.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생략)

(2) 구두/신발

1. 제품 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겔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 8. (생략)

(3)~(6) (생략)

(7) 영상가전(TV류)

1. (생략)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10. (생략)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현행과 같음)

(2) 구두/신발

1. 제품의 주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겔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 8. (현행과 같음)

(3)~(6) (현행과 같음)

(7) 영상가전(TV류)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8)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1. (생략)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9. (생략)

(9)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1. (생략)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11. (생략)

(10)사무용기기(컴퓨터/노트북/프린터)

1. (생략)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 10. (생략)

(8)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9. (현행과 같음)

(9)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 11. (현행과 같음)

(10)사무용기기(컴퓨터/노트북/프린터)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정보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대상 상품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11)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더)

- 1. (생략)
-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 3. ~ 9. (생략)

(12) (생략)

(13)휴대폰

- 1. (생략)
-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 3. ~ 10. (생략)

(14)내비게이션

- 1. (생략)
-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 3. ~ 11. (생략)

(11)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더)

- 1. (현행과 같음)
-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정보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대상 상품에 한함)
- 3. ~ 9.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휴대폰

- 1. (현행과 같음)
-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정보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대상 상품에 한함)
- 3. ~ 10. (현행과 같음)

(14)내비게이션

- 1. (현행과 같음)
-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정보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인증대상 상품에 한함)
- 3. ~ 11. (현행과 같음)

(15)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 1. ~ 2. (생략)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유무(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 4. ~ 7. (생략)
- <신설>
- 8. 품질보증기준
-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의료기기

- 1. ~ 2. (생략)
-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KC 인증 필 유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 4.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7. 제조국
- 8.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 9. 취급시 주의사항
- 10. 품질보증기준
-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생략)

(15)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 1. ~ 2. (현행과 같음)
- 3. KC 인증 필 유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 4. ~ 7. (현행과 같음)
- 8.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 9. 품질보증기준
-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의료기기

- 1. ~ 2. (현행과 같음)
- <삭제>
-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6. 제조국
- 7.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 8. 취급시 주의사항
- 9. 품질보증기준
-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현행과 같음)

(18)화장품

- 1. (생 략)
- 2.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19) (생 략)

(20)식품(농수산물)

- 1. ~ 4. (생 략)
- 5. 관련법상 표시사항
 - 5-1.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 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 5-3.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 5-4., 6 ~ 8. (생 략)

(18)화장품

- 1. (현행과 같음)
- 2.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19) (현행과 같음)

(20)식품(농수산물)

- 1. ~ 4. (현행과 같음)
- 5. 관련법상 표시사항
 - 5-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 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 5-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 5-4., 6 ~ 8. (현행과 같음)

(21)가공식품

-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 1-1. (생략)
-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1-3. ~ 1-7. (생략)
-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 1-9. (생략)
- 2. (생략)

(22)건강기능식품

- 1.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 1-1. (생략)
-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1-3. ~ 1-7. (생략)
- 1-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 1-9. ~ 1-12. (생략)
- 2. (생략)

(21)가공식품

-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 1-1. (현행과 같음)
- 1-2.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 1-3. ~ 1-7. (현행과 같음)
-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1-9.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22)건강기능식품

- 1.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 1-1. (현행과 같음)
- 1-2.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 1-3. ~ 1-7. (생략)
- 1-8.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1-9. ~ 1-12. (생략)
- 2. (생략)

(23)영유아용품

- 1. (생략)
- 2. KC 인증 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 3. ~ 5. (생략)
- 6. 사용연령
- 7. ~ 12. (생략)

(24)~(25) (생략)

(26)서적

- 1. ~ 6. (생략)
- 7. 목차 또는 책소개

(27) (생략)

(28)여행패키지

- 1. ~ 5. (생략)
- 6. 포함 내역 (식사, 인솔자, 공연관람 등)
- 7.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안내원수수료, 식사비용, 선택사항 등)
- 8. ~ 10. (생략)

(23)영유아용품

- 1. (현행과 같음)
- 2. KC 인증 필 유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 3. ~ 5. (현행과 같음)
- 6.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기)
- 7. ~ 12. (현행과 같음)

(24)~(25) (현행과 같음)

(26)서적

- 1. ~ 6. (생략)
- 7. 목차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27) (현행과 같음)

(28)여행상품

- 1. ~ 5. (현행과 같음)
- 6. 포함 내역 (식사, 인솔자, 공연관람, 관광지 입장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련 세금 및 공과금 등)
- 7.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가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과 변동가능성, 선택관광, 안내원 봉사료 등)
- 8. ~ 10. (현행과 같음)

(29)항공권

- | |
|---|
| 1. ~ 6. (생략)
7. <u>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u>
8. (생략) |
|---|

(30)~(34) (생략)

<신설>

<신설>

(29)항공권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및 금액(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u>
8. (현행과 같음) |
|--|

(30)~(34) (현행과 같음)

(35)모바일쿠폰

- | |
|--|
| 1. <u>발행자</u>
2. <u>유효기간, 이용조건(유효기간 경과시 보상 기준 포함)</u>
3. <u>이용 가능 매장</u>
4. <u>환불조건 및 방법</u>
5. <u>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u> |
|--|

(36)영화·공연

- | |
|--|
| 1. <u>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u>
2. <u>주연(공연에 한함)</u>
3. <u>관람등급</u>
4. <u>상영·공연시간</u>
5. <u>상영·공연장소</u>
6. <u>예매 취소 조건</u>
7. <u>취소·환불방법</u>
8. <u>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u> |
|--|

<신 설>

(35)기타

1. ~ 5. (생 략)

V. 제검토기한 (생 략)

부 칙

(37)기타 용역

1. 서비스 제공 사업자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이용조건 (이용가능 기간·장소, 추가비용 등)
4. 취소·중도해약·해지 조건 및 환불기준
5. 취소·환불방법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8)기타 재화

1. ~ 5. (현행과 같음)

V. 제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